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1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12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수과장 신남동)

가. 제안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편입·개정되고,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사용료 및 분뇨·오수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표준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2007. 7. 6.)됨에 따라,
-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하천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가.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함.(안 제2조)
- 나.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하수관거 준설,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및 배수설비 준공검사,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마.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 바.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및 수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및 제19조)
- 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처리비의 징수·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자.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 차.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예에 따르도록 함. (안 제24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93호
의결 년월일	2007. 12. 21 (제140회)

제출년월일 : 2007.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편입·개정되고,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사용료 및 분뇨·오수 등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 표준조례안이 환경부로부터 시달(2007. 7. 6.)됨에 따라,
-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하천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함.(안 제2조)
- 나.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및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하수관거 준설,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및 배수설비

- 준공검사,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5조부터 제9조까지)
- 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 10조 및 제11조)
- 마. 하수배출량의 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바.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및 수탁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및 제19조)
- 아.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분뇨처리장 처리비의 징수·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자.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 차.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24조)

□ **첨 부 : 부천시 하수도사용조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 사용 개시신고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을 받아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하수관거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의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 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배수설비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고된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업종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일 시설 내에서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입방미터(m^3)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 업종으로 적용한다.

③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서를 접수할 때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수도 사용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의 징수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하수도업무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

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업무담당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를 설치한 후 봉인은 시장이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발생적인 고장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에서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를 설치한 이후에는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및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에는 10m³/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의 예: 별표 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

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text{m}^3/\text{일}$ 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지역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text{m}^3/\text{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text{원}/\text{m}^3/\text{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의 경우에는 인허가 시에 부과하고, 납부고지서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의 준공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의 전일로 한다. 다만,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협의 시 부과하고 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이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m³/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의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우리 시의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일 최대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수량과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하수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할 경우에는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의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

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부과하고, 착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분뇨의 수집·운반의 대행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제7항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월별 정화조청소실적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분뇨수집·운반의 수탁처리) 인접 시·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그 밖에 수탁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접 시·구의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0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축산 폐수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1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에서 처리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된 분뇨를 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를 수집·운반할 때 배출자로부터 분뇨처리장 처리비(이하 “처리비”라 한다)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 수수료 및 처리비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수수료의 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우리 시의 물가상승률에 따라 부천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처리비 징수방법 등) ① 처리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처리비를 징수한다.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월별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에 10원 미만인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③ 시장은 처리장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분뇨반입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징수한다.

④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전월의 분뇨수집·운반 실적을 다음 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부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부천시 재이용수급수 조례」에 따라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4.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수도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4조(지방세법 등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비 고
	사용구분(m ³ /월)	m ³ 당 단가(원)	
가 정 용	20이하	170	단, 초·중·고등학교는 사용량에 관계 없이 m ³ 당 360원 적용
	20초과~30이하	280	
	30초과	420	
일 반 용	50이하	360	
	50초과~300이하	730	
	300초과~1,000이하	1,100	
	1,000초과	1,470	
대 중 탕 용	1,000이하	290	
	1,000초과~2,000이하	340	
	2,000초과	460	
산 업 용	m ³ 당	320	

「주」 단일시설 안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별표 2]

하수도 사용 업종 구분표(제10조제2항 관련)

업종별	구분내용
가정용	1.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기숙사 포함) 2.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포·철물 등의 소매업 및 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사서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반용	1.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2.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대중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

- 「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3]

수질하수도사용료(제10조제3항 관련)

1. 대상항목: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2. 사용료 산정기준

가.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나. BOD 또는 COD 값 중에서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 대로 적용한다.

다.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따라 산정한다.

3.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m³/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의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text{만원}) \times (6/100) \times (183/365) = 3(\text{만원})$$

[별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의 예(제15조제1항 관련)

(m³/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 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 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 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관련)

○ m^3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alpha = 1 + \left(\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완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 \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완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는 하수처리장(공공하수처리시설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 사업비를 포함한다) 및 하수관거 등 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사업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때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은 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합한 것으로 한다.

※ 개별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에서 관거 설치비는 제외한다.

[별표 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수집·운반	처 리	계
18리터 당	270원	18원	288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 수 료		
	수집·운반	처 리	계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3,903원	750원	14,653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031원	100원	1,131원

- ※ “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에는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 “처리”는 분뇨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한다.

[별표 8]

중수도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 관련)

업 종	구 분	감 면 비 율
가 정 용		30%
일 반 용		"
대 중 탕 용		"
산 업 용		"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계산 예 >

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 (하수도사용료 100원×30%) = 70원

[별표 9]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3항 관련)

업 종	구 분	감 면 비 율
가	정 용	30%
일	반 용	"
대	중 탕 용	"
산	업 용	"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계산 예 >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 (하수도사용료 100원×30%) = 70원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 공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	설 치 목 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 치 위 치						
	관 종	PVC관, PE관, 흙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m ³ /일		※ 제12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 사항	2차 검사	비 고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 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기록하여야 함.							
<p>「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부천시장 귀하</p>							
※ 구비서류: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현행 조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배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관리자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거, 물받이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공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등을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6. "빗물펌프장"이라 함은 빗물을 제외지, 하천, 기타 공유수면으로 강제 배수시키는 시설로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7. "차집관거"라 함은 오수와 일정량의 빗물을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8. "중계펌프장"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의 관로, 펌프장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상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
9. "개량"이라 함은 하수도의 전면보수, 재축, 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배수설비의 설치관리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①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시장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 개조 또는 수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 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5에 의한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및 그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및 배수설비의 귀속) 공사의 비용은 그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의 부담으로 하고, 공유지내에 설치된 배수설비는 시의 소유로 한다.

제7조(공사비 산출방법)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등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등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의 비용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고시 할 수 있다.

제8조(공사비의 선납등)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인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의 계산액을 신청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한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비를 환부한다. 다만,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공업자) ①공사의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 하수도 설비 공사업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01.09>

②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시공업자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제5조 및 제10조의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장 공사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등의 시행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수시설의 이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제3조제1항의 기간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배수설비의 재설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폐쇄를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그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⑤제4항의 공사비의 산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공사에 수반한 책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제12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배수설비는 그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된 배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관리태만으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 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하수도의 사용

제13조(사용 개시등의 신고)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오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청 및 「부천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 또는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일시사용 및 점용허가) ①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의 준공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완료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제16조(사용료) ①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요율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중 오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구분은 (별표2)에 의한다. 다만, 동일 시설내에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오수에 따라서 구분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가 기준을 고시한 때에는 시장은 (별표1)의 사용료외에 (별표3)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동일 시설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신설 2003.11.21>

제17조(오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제1항의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③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의 사용량과 신고한 오수배출량이 다를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오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측정기를 설치하고 동일사업장의 모든 오,폐수등이 동기기를 통하여 배출될 경우 동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④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용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배출량등의 조사) 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의2(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제13조 지하수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를 한 자는 하수도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측기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측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는 다음 각호와 같은 것으로 설치하며 시장에게 봉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1. 공인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 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

③시장은 하수도사용자가 설치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검정기관에 기능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정에 필요한 비용은 하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동시 징수한다.

②상수도사용료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와 고지서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⑤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단일 양수기 또는 단일 양수시설에 의하여 2가구이상이 공동급수하는 경우에는 사용총량을 사용가구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단,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한다.

⑥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20조(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 할 때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당해 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산정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년도분을 당해 년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는 당해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로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원인자 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 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 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6과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목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

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 수량이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할 것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사설의 설치시 승인된 량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할 것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 2007.01.09>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지설지구 등)

(5) 기타 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할 것

○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공사시 공공 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할 것.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계획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2. 별표 6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4. 제1호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출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과 당해지역의 계획인구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보고서에 의한 일최대하수량 원단위를 곱하여 산출한 값을 비교하여 많은 양을 하수발생량으로 할 것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전에 징수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3.11.21>

제22조(가산금) ①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감면) 시장은 공익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부과액 조정신청) ①사용료, 점용료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또는 점용료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자료제출 명령등) 시장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7조(권리의무의 승계)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배수중지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수 있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3.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상당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공고를 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신청의 접수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징수 및 정산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지정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및 점용허가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의 인정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등의 조사
1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13.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점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에 따른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단, 택지개발지구는 시장이 징수함)
1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단, 택지개발지구는 시장이 징수함)
1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징수
1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7.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8.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명령등
19.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20.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31조(포상금 지급)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금액을 징수한 공무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 및 하천수를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 신고한 공무원 : 징수액의 100분의 5
3. 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도 사용료 제도발전과 수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 「부천시 제안 규칙」에 의거 심사 시상<개정 2007.01.09>

제32조(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86. 5. 1 조례 제760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80. 6. 1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
-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적용례) 이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사용료의 징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이후부터 적용한다.

부칙<1988. 1. 18 조례 제860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1988. 10. 31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2. 12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 14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2. 18 조례 제1634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계측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사용중인 계측기에 대하여는 유효기한까지 그 사용을 인정한다.
- ③(일반적인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 4. 30 조례 제1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3. 24 조례 제1743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③(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제16조(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 9. 29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 1. 15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7.01.09. 조례 제2204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